

작성방법

1.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- 가. 상속재산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)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(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)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
 - 나.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
 - 다.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(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특정금 전신탁·보험금·공제금 및 어음)의 가액을 초과할 것
2. "㉚ 유형"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√ 표시를 합니다.
3. "㉜ 종류"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국채 및 공채
 - 나. 국·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
 - 다.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(바의 재산을 제외)
 - 라.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(가, 나, 마의 재산을 제외)
 - 마. 국·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
 - 바.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
4.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비상장주식 등)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5. "㉝ 평가기준일"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가.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: 상속개시일
 - 나.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: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
6. "㉞ 평가기준"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7.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(또는 변경 신청)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.
※ 물납철회사유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
8.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(성명)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,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.